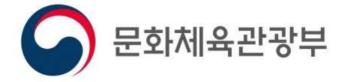
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

2025. 1. 2.



목 차

I.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기 지원 지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Ⅱ.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	5
1. 종합여행업, 국내여행업, 국내외여행업	6
2.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인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3. 휴양콘도미니엄업	6
4.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	7
5. 야영장업	7
6. 관광공연장업	7
7. 국제회의시설업	8
8. 국제회의기획업	8
9. 외국인환자 유치업	8
10. 종합유원시설업, 일반유원시설업	9
11. 기타유원시설업	9
12. 관광식당업	9
13. 관광면세업(보세판매장)	0
14. 관광면세업(사후면세점)1	0
15. 관광순환버스업1	0
16. 관광펜션업1	1
17. 한옥체험업1	1
18.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1	1

	19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12
	20. 관광사진업12
	21. 관광유람선업12
	22.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13
	23. 관광지원서비스업13
	24.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
	25. 관광궤도업14
III.	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신청서15
	1.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16
	2. 융자신청서19

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

> 2025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1. 지원 규모: 700억원

2. 시행 일정

가. 신청서류 접수기간 : 2025.1.2.(목) ~ 11.14.(금) *방문접수

나. 신청서류 접수처 :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

*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(1588-7365)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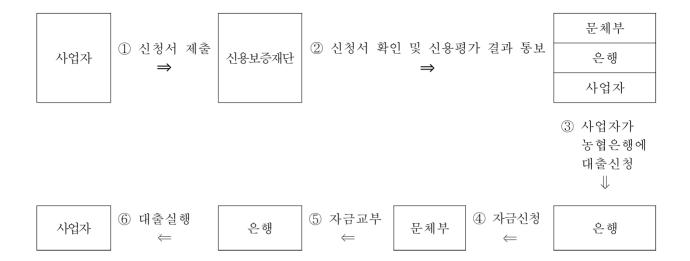
[28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]

지역	전 화 번 호	지역	전 화 번 호
서울 본점	1577-6119	부산 본점	051-860-6600
대구 본점	053-560-6300	인천 본점	1577-3790
광주 본점	062-950-0000	대전 본점	042-380-3800
울산 본점	052-289-2300	경기 본점	1577-5900
강원 본점	033-260-0001	충북 본점	043-249-5700
충남 본점	041-530-3800	전북 본점	063-230-3333
전남 본점	061-729-0600 경북 본점		1588-7679
경남 본점	1644-2900	세종 본점	044-865-0550

※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. 융자금 신청기간 : 2025.1.2.(목) ~ 12.5.(금)
 - ㅇ 융자금 신청처 : NH농협은행 영업점
 - ㅇ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.12.18.(목)까지 완료해야함
 - * 관광사업자는 <u>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</u>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.
- 라.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
- 3.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
- 가. 신청 한도 : 최대 2억원
 - *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- 나. 지원대상
- ① (일반지원) 「관광진흥법」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 - NICE평가정보(주)의 개인신용평점*이 355점 이상인 자
 - *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,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
- ※ 대기업, 중견기업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 - * 대기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 - *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의 중견기업
- ② (소액지원)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
 -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
 - * 단,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4. 대출기간 :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
- 5. 대출금리
- 가. 기준금리 :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'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'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, 그 하한은 2.25%로 함(*2024년 4/4분기 기준금리 : 3.03%)
- 나. 대출금리 : 기준금리에서 1.25%p 차감
- 6. 소요자금 신청범위
 -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,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

7. 지원 절차



-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
-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, 문화체육관광부, NH농협은행으로 통보
- ③ 관광사업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
-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
-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
-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

8. 유의사항

- 가.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
- 나. 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 불가
- 다. 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야 함
- 라. 융자 취급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
- 마.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,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 받으시기 바람.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

- 바.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'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'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(표준서식)를 제출
- 사. 이 지침은 「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(2025.1.2.)」 공고분에 대해서 적용하며,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 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

9.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

- 가.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.
 -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
- ㅇ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-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
- * 단,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('23년 이후)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 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
-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처분(주의 포함)을 받는 경우
- ㅇ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
- ※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(신용보증 포함)을 취소하고,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
- 나.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
 - 최근 2년이내(처분일자 기준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및
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, 이
 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
붙임: 1.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
2.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

Ⅱ.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
1.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. 관광사업등록증 사본.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2.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호텔업(특급호텔 포함)을 운영 중인 자
 - *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등급인정증 사본(호스텔업은 해당없음)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3. 휴양콘도미니엄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4.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5. 야영장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6. 관광공연장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7. 국제회의시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8. 국제회의기획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9. 외국인환자 유치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, 최근 2년이내(*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.)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
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(* 한국보건산업진흥원)
-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(*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)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0. 종합유원시설업, 일반유원시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1. 기타유원시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2. 관광식당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3. 관광면세업(보세판매장)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4. 관광면세업(사후면세점)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
- 「관광진흥법」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5. 관광순환버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

- 융자신청서.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.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6. 관광펜션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7. 한옥체험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8.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(숙박업)을 받은 자

- 융자신청서,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19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20. 관광사진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21. 관광유람선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22.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23. 관광지원서비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24.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

ㅇ 신청자격

-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,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(KAHF)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25. 관광궤도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Ⅲ.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

▶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

1. 업무안내

- ㅇ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
-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,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 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'은행법'이 정한 "구속행위"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.
- ㅇ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도입

구분	최소단위	비고		
대하 / 전대신청	백만원	융자선정 최소단위 준용		
기한전 상환	백만원	백만원 이상부터는 만원단위 적용 가능		

- ㅇ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
 -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,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
 - 기타 :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
- 융자취급은행은 융자금 수혜자로부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'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'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(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)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람.

2. 사후관리

- 월별 융자현황(매월 익월 10일 이내), 반기별 융자현황(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)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
- 용자금 <u>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</u>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(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전화, 대표 성명 등)과 관광사업 등록(신고, 지정, 인증)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을 경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
- 용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을 경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

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,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함

-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
-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-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처분(주의 포함)을 받는 경우
 - *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
-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
 -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
-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
-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,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
- ㅇ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
 -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표준서식)

□ 목적 ○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
 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,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개업일·휴업일·폐업일,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 ○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 □ 동의 효력기간 ○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 ○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(인)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

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

○○신용보증재단 귀중

1. 신청기업

기 업 체 명	대표자	설립일자 (개업일자)	
사업자등록번호	법인(주민)번호	당기매출액 (또는 최근1년매출액)	
업 종	주요제품	상시근로자	во

2. 신청내용 (해당칸에 "√" 표시)

	보 증 신 청 내 용	주 채 무 내 용		
보 증 종 류	대출보증	대 출 과 목		
보 증 금 액		대 출 금 액		
보 증 기 한	6년	용 도	운전자금	
보 증 방 법	개별보증	대 출 기 한	6년	
보 증 비 율	100 %	상 환 방 법	원금균등분할상환 (3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)	
비 고	□ 일반지원 □ 소액지원 (20백만	원 이하)		

※ 보증료 환급시 입금계좌 (본인계좌)

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예금주
--	-------	------	-----

- 신용보증지원 없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 가능한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즉시 융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문체부 관광기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등에는 보증신청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을 이용한 보증지원 불가할 수 있음
-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(금융질서문란정보)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되며,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음
- 서비스개선을 위해 정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조사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
-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신청금액은 일부 감액 또는 거절 될 수 있음
- 관광사업자는 보증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에서 융자신청 가능

20 년 월 일

신청기업명	: 대표자 :	(인)
 신청인에	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코자 하오니	 니 신용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자 :	전화 :	팩스 :

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 ○○○○지점장 (인)

3. 대표자 관련사항 (※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작성)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핸드폰	8
Ö Ö		구인 중독 인오			이메일	
	기 간		근 무 처		담당업무	최종 직위
대표자 주요경력	-					
1 0	-					
	실제거주지	주소 :				
거 주 지	결제기구시 	자가,	임차 (보증금:	백만원	<u>.</u> , 월세:	천원)
71 7 7	주민등록상	주소 :				
	거주지	자가,	임차 (보증금:	백만원	<u>년</u> , 월세:	천원)

4. 사업장 관련사항

보사	주소 :			전화번호	8
돈 사	자가, 임차(보증금:	백만원, 월세:	천원)	FAX	8
즈 IL어자	주소 :			전화번호	8
주사업장	자가, 임차(보증금:	백만원, 월세:	천원)	FAX	8

5. 자산 및 부채현황 (사업장 및 거주주택 이외)

자	부동산	()백만원 (소재지 : ()백만원 (소재지 : ()백만원 (소재지 :))	부	대출금	()백만원 (은행명 : ()백만원 (은행명 : ()백만원 (은행명 :))
산	예·적금	()백만원 (은행명 : ()백만원 (은행명 : ()백만원 (은행명 :))	채	기 타	()백만원 (내 용: ()백만원 (내 용: ()백만원 (내 용:))

6. 경영진 및 주요주주 (20 년 월 일 현재) (※ 법인기업의 경우만 작성)

	직위	성명	연령	대표자와 관계	주요경력		성명	대표자와 관계	소유주식	점유비(%)
경						주				
අ						요 주				
진						주				